



축 산업 의 경 영 관 리 (9)

민 경 래

퓨리나 코리아 경영지도부장

것이라 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 (損益計算書)

1. 손익계산서의 뜻

손익계산서란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의 성과인 손익(즉 이익이 발생했느냐 또는 손해를 보았느냐)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산출 표시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일종이다. 사업의 목적은 이윤추구(利潤追求)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당연하나 사업운영 결과가 반드시 이익만 발생한다면 사업가 치고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내부적 결함이나 또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서 이익은 발생치 않고 반대로 손실을 보게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누구나 사업을 할때는 이익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결과에 가서는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가 또는 손해를 보았다면 얼마를 손해보았는가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분명히 할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까닭에 손익계산서는 앞에서 설명해온 대차대조표와 더불어 재무제표의 쌍벽을 이루는

2. 손익의 산출방법

사업운영의 성과인 손익을 산출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재산법(財產法)

2) 손익법(損益法)

1) 재산법(財產法)

재산법이란 비교적 간단하게 손익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업을 개시하며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한뒤에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한 자본금과 사업을 운영한 뒤 손익계산을 하는 시점에서 자본금과 비교하여 자본금이 증가한 만큼 이완이 발생한 것이고 자본금이 감소했으며 감소한만큼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즉 손익계산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움으로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동안의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이때 일정기간을 회계학상 회계기간(會計期間)이라고 하며 회계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으로 잡는 것이 통례이며 회계기간의 시작과 마감은 기업체의

내부 사정에 따라 임의로 정해도 관계 없으나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 까지의 1년간으로 잡는 것이 편리하다. 세법상으로도 회계기간의 시작과 마감은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재산법에 의한 손익산출은 기초대차대조표의 자본금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대차대조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산식(算式)이 나오게 된다.

$$\text{자산(資產)} = \text{부채(負債)} + \text{자본(資本)}$$

$$\text{자산} - \text{부채} = \text{자본}$$

$$\text{다시 } \text{자본} = \text{자본금} + \text{이익이 됨으로}$$

$$\text{기말자본(期末資本)} - \text{기초자본(期初資本)} = \text{순이익(純利益)} (\text{또는 손실})$$

1회계기간이 끝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보니 자본금이 1,200,000원이었고 기초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이 1,000,000원이었다면

$$\text{기말자본금} - \text{기초자본금} = \text{순이익임으로}$$

$$1,200,000 - 1,000,000 = 200,000$$

즉 1회계기간 동안에 200,000원이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쉽게 알수있고,

반대로 기초자본금이 1,000,000원이고 기말자본금이 900,000원이라면

$900,000 - 1,000,000 = -100,000$ 즉 1회계기간동안에 100,000원의 손실을 쉽게 알수 있다. 이와같이 재산법은 간단히 산출해 낼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어떻게 해서 200,000원이란 이익이 발생했으며 또 어떠한 원유로 해서 100,000원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알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기업운영의 성과인 이익과 손실을 산출해 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익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 사업운영 기간에 보다 높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된 원인을 찾아내어 다음 회계기간에는 최소한도로 손실을 면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산법에 의한 손익계산방법이 완전치는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 하나 소

규모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가의 경우 현실적으로 경리직원을 두고 정확한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정확한 기록기장을 하지 않는 한 손익법에 의한 손익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채진법에 의해서라도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소규모의 개인사업체인 경우 자기가 투자한 자본금이 얼마이고 총 얼마의 자본금을 갖고 자기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정확한 기장을 하고 손익법에 의한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현실적인 여려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정확한 기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자기 사업체의 자신과 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만은 꼭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물론 대차대조표도 제대로 작성하려면 회계절차에 따라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정확히 기록정리하여야만 하나 사업을 시작할때에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다면 기중(期中)의 거래를 기록정리 하지 못하였더라도 기말(期末)에 가서 기업체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빠짐없이 기말 대차대조표에 기록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기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날에 거래가 끝난다음 대차대조표 계정별로 하나 하나 정리하기 위해서 실재 재고조사(在庫調査)를 실시한다.

첫째로 그날의 거래를 끝낸 다음 기업체에 남아있는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은행거래장에서 예금의 잔고를 확인하여 외상매출금대장에서 '총외상매출금 합계액을' 산출해내며 받을 어음대장에서 미수금액의 합계를 산출해 내는등의 절차를 밟아서 대차대조표 각계정에 금액을 기입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소규모 사업체이고 기장을 안하는 업체일지라도 외상매출금 미수금대장이나 미불금 대장조차 비치하지 않은 업체는 없을 것이다. 기말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이상 설명한 현금,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미수금등과 같은 계정을 기입하기는 용이한 일이나 상품이나 원료 또는 사료, 꼭 물 약품등과 같은 물체

를 대차대조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물량으로 확인된 것을 화폐단위로서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때 매입(買入)시의 가격이나 기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문제 없이 매입가격으로 평가하여 재고조사에서 확인된 수량을 곱하여 화폐단위로 표시하면 되나 물가는 항상 시장 사정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임으로 매입시의 가격과 평가시의 가격이 같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재고자산(在庫資產)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1) 원가법(原價法)

(2) 시가법(時價法)

(3) 저가법(低價法)

(1) 원가법(原價法)

원가법이란 재고자산의 가격을 매입할 때의 원가로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표면상으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 같으나 내용적으로는 자세히 관찰하면 모순점이 있다. 즉 매입시의 원가와 평가시의 가격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매입시의 원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합당한 평가방법이 못되는 것이다. 즉 평가시의 가격이 매입시의 원가보다 높을 경우에 매입원가로 평가하면 안전한 평가라 할 수 있으나 평가시의 가격이 매입시의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입시의 원가와 평가시의 가격과의 차액만큼 가상이익(假想利益)이 발생함으로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이 부당하게 이익으로서 나타나게 됨으로서 불합리한 손익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2) 시가법(時價法)

시가법이란 매입시의 원가에 관계없이 평가시의 시가(時價)로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 또한 표면상으로는 평가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물건의 가격으로 항상 변동하는 것으로서 재고조사 당시의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를 생각할 때 다음 기말에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재고자산의 가격이 당기재고 조사시의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만큼 가

상이익이 당기손익계산에 포함됨으로서 부당한 손익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3) 저가법(底價法)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 그 재고자산의 매입당시의 원가와 평가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그중 낮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세가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中最 가장 합리적이고 신중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재고조사 당시의 재고자산의 가격을 매입원가와 시가와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서 앞으로 재고자산의 가격이 더이상 평가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회박함으로서 정당한 손익계산을 할 수 있고 차기(次期) 손익계산시세 재고자산의 가격이 당기에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보다 올라가드라도 오히려 실현 가능한 이익을 회소(過少)하게 평가한 결과가 됨으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원칙적으로 비용은 다소 높게 책정하고 이익은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손익계산방법인 것이다.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이상 설명한 세 가지 평가방법 중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대차대조표 해당 파목과에 기입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타 단기채권은 직원 및 경영주에 의한 가불금액이나 기타 거래선 또는 사업과 연관하여 받을 채권액의 합계를 산출하여 기입하면 될 것이고 선불금 또한 같은 요령에 의하여 산출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재고품으로서의 소모품 등과 같은 재고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기록하면 될 것이나 가금가축의 평가의 경우에 다소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가금가축이란 성장생체동물(成長生體動物)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변동할 것임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가금가축의 사육에 지출된 비용을 정확히 기록해 놓지 않은 이상 평가하기가 용이치 않을 것이다.

가금가축도 산란계 종계, 종돈, 종우의 경우에는 임가상각을 고려하여 순가금 가축의 실존 가치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즉 사육비의 총계가 기록되었다면 감가상각액을 공제하고 남는 실존가치만을 평가하면 될 것이다. 사육비의 지출액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히 편법적으로 처분가능한 최저액으로 평가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부로 일려 비육돈 비육우의 경우도 역시 처분가능하고 최저가격으로 평가하는 도리밖에 없다. 다음으로 고정자산의 평가방법으로서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取得價額)에서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산출하여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실존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실례를 든다면 계사의 수명이 10년이고 총건축 및 부대비용을 합한 취득가액이 100만원이라면 정율법에 의한 내용년수 10년의 전물의 감가상각율은 $206/1000$ 임으로 1차년도 말의 계사의 감가상각액은

$$1,000,000 \times 206/1000 = 206,000\text{원}$$
으로 취득가액 1,000,000원에서 1차년도 감가상각액 206,000원을 제하면 실존가치는 794,000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정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과 내용년수를 알면 산출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와같은 요령에 의하여 기말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기초 또는 개시대차대조표와 비교하면 자본금의 증감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경우 대차대조표등식의 원리에 의하여 재산법에 의하여 산출된 순이익액과 손익법에 의하여 산출한 순이익과는 반드시 일치하게 된다. 단지 이익 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나 경위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을 뿐이다.

참고적으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명)과 감가상각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축산업과 관계되는 부분만 요약한 것임을 부언해 둔다.

종류	구조 및 용도	세 목	내용년수
건물	철근 콘크리트 또 는 철물철근 콘크리트	사무실, 주택, 점포	60년
	연와 석조 및 부록조	사무실, 주택, 점포	50년
토벽조건물		창고사업의 창고건물 사무실, 주택, 점포	35년 25년

목조건물	공장 및 창고건물 기타 사무실, 점포, 주택 창고 및 기타 용도	10년 15년 25년 15년
기계 및 기구	전기 명난방 기구 도량형기 소독 및 살균기구 간판	8년 6년 4년 3년
가구증기	침재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넷 옹접셀 침대 금고 수제금고 시계 라듸오	15년 8년 8년 20년 6년 10년 5년
배달기구	자전차 리어카	3년
차량	승용차 삼륜차 화물차량	5년 4년

가축의 수명

가축	소 말(경주용) 말(기타) 돼지 면양	6년 4년 8년 3년 5년
가금	종계(산란계, 부로 일려)	현행세법상으로는 감기상각을 인정치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기상각을 고려해야 될 줄 사려됨.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율

내용년수	상각율	내용년수	상각율	내용년수	상각율
1		21	104/1000	41	55/1000
2	684/1000	22	99/1000	42	53/1000
3	536	23	95	43	52
4	438	24	92	44	51
5	369	25	88	45	50
6	319	26	85	46	49
7	280	27	82	47	48
8	250	28	79	48	47
9	226	29	76	49	46
10	206	30	74	50	45
11	189	31	72	51	44
12	175	32	69	52	43
13	162	33	67	53	43
14	152	34	66	54	42
15	142	35	64	55	40
16	134	36	62	56	40
17	127	37	60	57	40
18	120	38	59	58	39
19	114	39	57	59	38
20	109	40	56	60	38